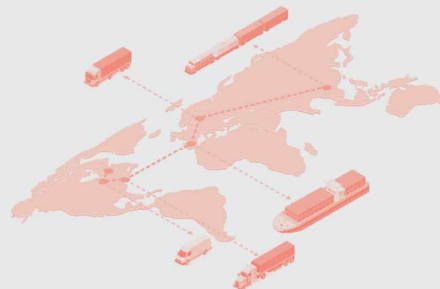




EU 공급망실사법 주요내용 및 사례

EU 공급망실사법 주요내용 및 사례



목 차

제1장 추진배경	1
가. 도입배경 및 추진 경과	2
나. EU ESG 정책 동향	5
제2장 공급망실사법 주요내용	11
· 공식명칭 및 규범 유형, 적용 대상	11
· 적용 시점	12
· 실사 의무	13
· 법적책임 및 제재	15
· 기타사항	15
제3장 공급망실사 관련 EU 기업 사례	16
가. 기사행 실사법 관련 기업 분쟁사례	16
나. 유럽 기업의 공급망 실사 대응사례	20
제4장 전망 및 시사점	27
가. 현지반응 및 전망	27
나. 우리기업 영향 및 대응방안	29

요 약

1. EU 집행위, 공급망실사지침* 초안 발표('22.2.23)

*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 EU 핵심가치인 지속가능성 구현을 위해, 기업이 공급망을 통해 인권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실사토록 의무화
 - 자발적 실사 체계만으로는 인권 및 환경보호에 역부족으로, 관련의무를 법제화하고 회원국별로 상이한 실사제도를 일원화 필요
 - '20.4월 법안 수립계획을 밝히고 약 2년여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중견·대기업 중심 실사 및 조치 의무사항을 담은 법안 초안 공개

2. EU 공급망실사지침 주요내용 및 전망

- 동 법안은 고용인원 및 매출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역내외 기업에 전 공급망에 걸쳐 인권·환경 관련 부정적 영향을 식별토록 법제화
 - 대상기업은 관련 정책을 내재화하고, 필요 시 실재·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제거 또는 완화토록 적절히 대응하고 그 정보를 공개할 의무
 - 협력사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 법안의 직접 적용대상이 아닐지라도 간접요구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
- 향후 법안내용 변동 가능성에 대비해 지속 모니터링, 선제대응 필요
 - 동 지침은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채택을 통해 발효 예정이며, 회원국은 2년 이내 국내법으로 전환할 계획
 - 관련 집행위와 의회의 입장이 상이해 세부내용이 변동 가능하며, 회원국별 입법 및 집행 과정에서 제재 수준 등이 상이할 가능성
 - 지속가능성 관련 공급망 실사의무 강화 추세로 사전대비를 통해 높은 인권·환경 기준을 준수하는 기업으로의 공급망 재편에 대응 필요

I

추진배경

가. 도입 배경 및 추진 경과

□ 도입 배경

- EU는 기본정책방향이자 핵심가치인 지속가능성 구현을 위해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 핵심요소인 ESG* 의무에 대한 EU 차원의 법제화 추진

*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 기업활동은 유럽 그린딜전략*의 연장선상에서 △기후중립 달성, △친환경 경제 전환,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핵심 요소

<참고 :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 '19.12월) >

■ 개요

- '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6대 정책 분야별 세부정책을 수립. 투자 프로그램인 InvestEU 등 EU 예산을 활용, 향후 10년간 약 1조 유로 예산 투입

■ 6대 분야

-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공급, △청정·순환경제를 위한 산업재편, △지속가능한 스마트 모빌리티 전환, △에너지 자원 효율적인 건물 보수 및 수리, △친환경 식품 시스템,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보존

< 유럽 그린딜 핵심내용 >



자료 : EU 집행위

- 기업활동의 △가치사슬에서 인권 및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포괄적인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성을 기업 지배구조에 통합, △기업의 의사결정이 인권, 기후, 및 환경영향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EU차원의 규범 도입을 통한 실사데이터 추적 및 활용 필요
 - EU 기업들은 복잡한 환경에서 운영되며, 특히 대기업은 글로벌 가치사슬에 의존
 - 상당수의 공급업체가 포함된 가치사슬 전반의 복잡성을 감안 시, EU 기업은 자사 가치사슬 내 인권 및 환경보호와 관련된 위험을 식별하고 완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따라서, 더 많은 기업이 실사를 수행하고 관련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면 EU 기업이 가치사슬 내 부정적인 영향을 식별하는게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
- 관련 규범에 대한 역내 최소 기준을 통일해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기업의 법적 의무를 강화
 - 프랑스를 선두로 네덜란드, 독일에서 실사 법안을 채택·시행(예정) 중이며,
 - 프랑스가 인권 및 환경 분야 등 가장 넓은 범위를 대상으로 실사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네덜란드는 아동노동 분야에 한정
 - 이밖에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웨덴에서 관련법을 채택할 계획

<공급망 실사 시행중인 회원국별 법안 주요 내용>

국가	법안명	주요 내용	채택연도 (시행)
프랑스	기업 실사 의무법 (Duty of Vigilance Law)	· 전 산업분야 내 인권 및 환경 분야 · 직원수 5천명 이상 기업대상	2017.3. (‘17년)

국가	법안명	주요 내용	채택연도 (시행)
		* 본사가 프랑스 역외 소재 시, 직원수 1만명 이상 기업대상 · 위반 시, 최대 3천만 유로의 과징금 · 민사책임 인정	
독일	기업 공급망 실사 법안 (Act on Corporate Due Diligence in Supply Chains)	· 전 산업분야 내 인권 및 환경 분야 · 직원수 3천명 이상 기업대상 ('24년부터 1천명이상) · 위반 시, 매출액에 비례한 과징금 또는 공공조달 참여 제한 등 행정제재 · 민사책임 미포함	2021.6. (‘23년)
네덜란드	아동노동 실사 의무법 (Child Labour Due Diligence Act)」	· 전 공급망 내 아동노동 분야 · 네덜란드 내 활동 중인 모든 기업대상 · 위반 시, 최대 82만 유로(또는 전세계 매출의 10%) 과징금 부과. 이외 최대 2년 이하의 형사처벌	2019.5. (‘22년 잠정)

- 역내에서 활동하는 역외기업에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 EU 단일 시장 내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

□ 추진 경과

- (‘20.4월) 집행위, 공급망 실사 의무화 법안 수립 계획 발표
- (‘21.3월) 유럽의회 공급망실사 결의안 채택, 집행위 법안 제출 요구

<유럽의회 결의안 주요내용>

- **(분야)** 인권, 환경, 거버넌스
 - * (인권) 사회권·노동권·노조, (환경) 기후변화·삼림 등, (거버넌스) 부패·뇌물 퇴치
- **(대상기업)** EU 내 활동하는 모든 기업 및 직·간접 연계된 공급업체
 - * 대기업 뿐 아니라 상장 중소기업 및 위험산업군 중소기업 역시 대상에 포함
- **(실사내용)** 공급망 내 인권·사회·노동권, 환경, 거버넌스에 미치는 잠재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식별, 예방 및 해결하고 관련 자료 공개
 - * △위험확인 및 평가, △예방 또는 완화, △실행 및 결과추적, △검토 및 공개 등 위험관리 시스템 구축
- **(입증책임전환)** 인권침해 및 환경훼손 피해자가 기업의 의무위반을 입증하지 않고, 기업이 면책을 위해 실사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음을 증명
- **(제재조치)** 회원국별 자율 결정하며, 총매출액에 비례한 과징금 및 행정제재* 부과, 각 회원국 재량에 따른 민사책임 부과를 허용
 - * 공공조달 입찰제한, 보조금 및 수출신용 등 공적 지원 접근제한, 강제노동이나 아동노동과 같은 심각한 인권침해와 관련된 제품 수입 금지 등
- **(모니터링·협력)** 회원국별 감독기관을 지정해 실사를 감독하고, 플랫폼의 개설 통한 역내 협력체계 구축 강화

- ('21.6월) 규제검토위원회(RSB)*의 집행위 공급망 실사 법안 부적합 판정에 따라 법안 초안 발표 '21.10월로 연기

* Regulatory Scrutiny Board : 특정 법안의 적정성 평가를 수행하는 집행위 내부기구

- ('21.10월) 집행위 법안 초안 발표 재 연기, '21.12월 전망
- ('22.2.23) 집행위 지침 초안 발표
- (~'24년) 유럽의회·이사회 표결을 거쳐 '24년 시행 목표

나. EU ESG 정책 동향

- ◆ 지속가능성 관련 표준 선점 위한 기준 마련 및 정보공개 의무 강화
- ◆ 대상 산업 및 기업별 다양한 공급망 실사 법률 도입 추세

□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집행위 제안, '21.4월)

- (명칭)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CSRD)
- (개요) 기업 활동의 사회, 환경 영향을 비재무제표를 통해 공개토록한 기존 EU 비재무정보보고지침(NFRD)의 개정규범
 - 주요 개정사항은 △적용대상기업 확대, △지속가능성 관련 보고정보 구체화, △감사의무 도입,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 마련, △지속가능성 정보 디지털화 등

<EU 지속가능성 공시 관련 규범>

구분	NFRD (비재무정보 보고 지침)	CSRD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	SFDR (지속가능금융 공시 규정)
명칭	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
채택	2014년	2021년 4월(제안)	2019년

구분	NFRD (비재무정보 보고 지침)	CSRD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	SFDR (지속가능금융 공시 규정)
시행	2018년(2017년 회계연도)	2024년(잠정)	2021년
대상	직원 5백명 이상 상장기업 은행, 보험사 등	모든 대기업, 상장중소기업	금융기관

- (대상) 모든 대기업, 상장 중소기업* 등 약 50,000여개 기업
 - * EU 기업분류상 초소형기업(micro enterprise) 제외
- (정보보고) 지속가능성 관련 △비즈니스 모델 및 전략, △목표 및 진행현황, △행정·관리·감독 기관 역할, △정책, △실사 프로세스, △사업 가치사슬 내 관련 부정적 영향 및 예방·완화·개선 조치 및 조치 결과 등
 - 집행위가 위임법률을 통해 '22.10월까지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 별도 채택 예정
- (감사) 보고된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에 대한 독립기관 감사 의무
- (디지털 공시) 재무제표와 경영보고서를 XHTML 형식으로 작성 및 보고하고, 마련 예정인 디지털분류시스템에 따라 지속가능성 정보에 '태그(tag)' 달기
- (추진경과) 집행위 법안제안('21.4월) 후 '22년 상반기 이사회·의회와 합의 도출 시 '23년 회계연도부터 적용 계획

□ EU 녹색분류체계('20.7월 발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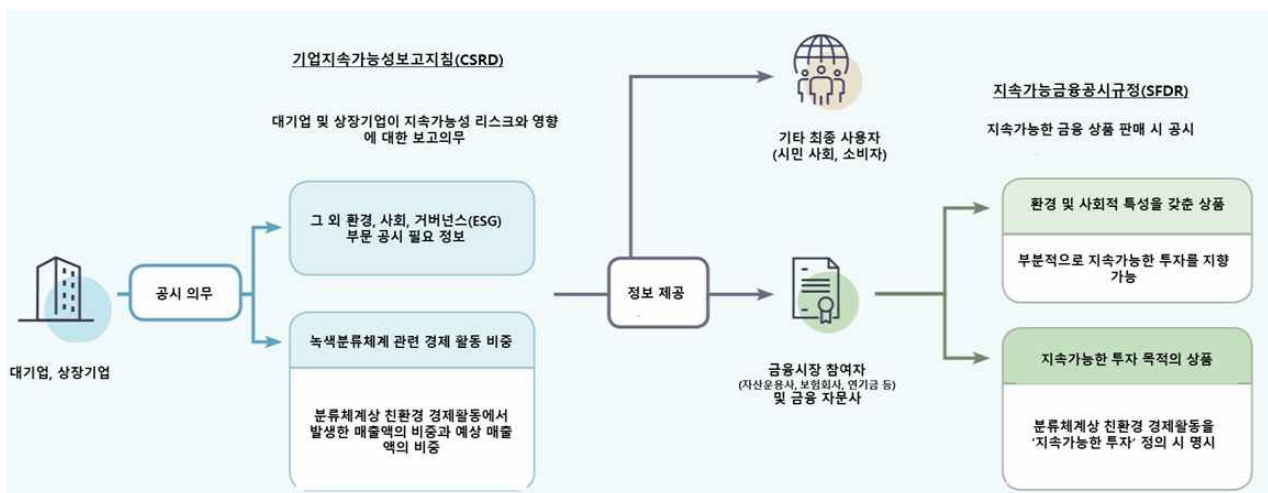
- (명칭) EU Taxonomy Regulation
- (개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에 대한 EU차원의 기준
- (내용) 6개 환경목표를 설정하고 4개 판단조건 충족 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으로 인정

친환경 경제활동 판단조건	환경목표
1) 하나 이상의 환경목표 달성에 상당한 기여 2) 다른 환경목표에 중대한 피해를 주지 않을 것 (Do No Significant Harm, 중대한 무해성 원칙) 3) 최소한의 안전장치 준수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 UN 지침서 등) 4) 규정에 명시된 기술심사기준 부합	1) 기후변화 완화 2) 기후변화 적응 3) 수자원,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보호 4) 순환경제로의 전환 5) 오염 방지 및 관리 6)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보호 및 복원

－ 이후 위임법률을 통해 환경목표에 기여하는 구체적인 경제활동의 목록 및 세부기준 공개

- (적용) CSRD, SFDR을 통해 기업에게 녹색분류체계상 친환경 경제 활동 비중 공시의무 부여

<EU 녹색분류체계 실제 적용 흐름도>



자료원 : EU 집행위

□ 산림 벌채와 황폐화 억제 규정(집행위 제안, '21.11월)

- (명칭) Regulation on deforestation-free supply chain
- (대상) 콩, 팜유, 소고기, 목재, 카카오, 커피 파생상품
- － 규정 시행 후 매 2년마다 대상 품목 검토 및 필요시 개정 예정

소고기	냉장·냉동소고기, 소가죽 및 가죽제품	팜유	팜유, 팜너트, 바바수유, 고형제품
코코아	코코아 원두, 코코아 페이스트, 코코아버터·파우더 및 초콜릿 등	콩	콩, 콩분말, 콩기름
커피	커피 관련 제품 일체	목재	통나무, 합판, 목재프레임, 목재 가구 등 목재제품 전반

- (내용) 대상품목 EU시장 출시 희망 시 벌채 및 산림 황폐화와 무관한 상품임을 입증, 집행위는 벤치마크 시스템*을 통해 국별 위험도 평가

* 위험도에 따른 등급 부여

- '20.12.31이후 벌채된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 수입 및 수출 금지
- 대상품목 취급 기업은 공급망 실사 보고서 제출 의무
- 단, 중소 교역업체의 경우 △공급자, 고객정보 수집 및 △최소 5년간 보관, △관할당국 요청 시 정보 제출로 의무사항 축소

- (페널티) 회원국별로 처벌 규칙을 정하고 집행

- 연매출 4% 수준의 벌금, 관련 상품 및 수익 몰수, 공공조달 제외 등

- (주체별 세부사항)

주체	시행 내용
기업	· '20.12.31 이후 벌채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았다는 정보 수집 * GPS 좌표, 위성사진 등 · 공급망 실사를 시행하고 공급망의 위험 요인을 평가 및 분석 · 위성 모니터링, 현장 감사 등 상품의 원산지 파악을 위한 조치 실시
회원국 관할당국	· 규정상 명시된 범위의 검사(inspection) 실시 · 벌금, 상품 압수, 거래 수익 몰수 등의 페널티 설정 및 집행
집행위	· 국가 벤치마킹 시스템을 도입, 산림벌채 위험성과 관련 정책 시행 등을 기준으로 국가를 3단계(높음, 표준, 낮음)로 구분 * 위험성 수준에 따라 상이한 실사 의무를 부여할 예정

- (추진경과)

- 집행위 법안 초안 제안('21.11월), EU 의회 및 이사회 승인 후 발효 예정

- 집행위 초안상 대상품목이 제한적이고, 기업에 민사 책임을 부여하지는 않지만 '20년 의회의 권장사항 대부분을 따른다는 평가

□ EU 배터리 및 배터리 폐기물 규정(유럽의회 수정안 기준)

- (명칭) Regulation concerning batteries and waste batteries
- (개요) 배터리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재활용원료 비율 강화, △라벨링, △배터리 수거, △탄소발자국, △공급망 실사 등 기준 마련
- '06년 EU 배터리 지침(2006/66/EC)을 폐지하고 제품감시규정(2019/1020)을 통합한 신규 규정
- (대상품목) 이동식(스마트폰, 전자기기 등), EV·차량용, LMT(전기자전거, 스쿠터 등)*, 산업용 등 모든 종류의 배터리
 - * 기존 집행위 법안에서 초경량차량(Light Means of Transport, LMT) 배터리 추가
- (실사) 배터리 출시자(제조사, 유통사, 수입자 등) 대상 원자재 공급망 실사 의무
 - 배터리에 함유되는 원자재의 공급망 추적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OECD 실사 가이드라인 부속서 II 적용
 - 제3자 독립기관에 의한 검증 및 관련 자료 공개
- (라벨링) CE 마킹 필수, '27년부터 수명주기, 충전용량, 위험물질 포함여부, 수거정보가 표기된 라벨 부착 의무
 - '23.7.1부터 카드뮴(0.002% 이상) 또는 납(0.004% 이상)을 포함한 배터리는 해당 화학기호(Cd, Pb) 및 별도의 수거처리 여부 표기 필요
 - '27.1.1부터 이동식 및 차량용 배터리의 경우, 용량 관련 정보를, 이동식 배터리는 최소의 수명주기 정보를 추가로 라벨에 포함 필요

- (재활용 원료) '30.1.1부터 일부 이동식, LMT, 산업용, 전기차용 배터리 내 코발트·납·리튬·니켈 물질의 재활용 원료 사용 의무

'30.1.1부	'35.1.1부
코발트 12%, 납 85%, 리튬 4%, 니켈 4%	코발트 20% 납 85%(변동없음), 리튬 10%, 니켈 12%

- (수거) 폐배터리 회수율 목표 설정

이동식 배터리	전기자전거 등 LMT 배터리
'25년 70% → '30년 80%	'25년 75% → '30년 85%

- (탄소발자국) LMT, 산업용, 전기차용 배터리 대상, 탄소발자국* 선언('24.7월~) 및 탄소발자국 등급 표기 라벨 부착('26.1월~) 필요

* 제조·소비·폐기 등 배터리의 전 밸류체인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배출되는 탄소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

- '23.1.1까지 관련 배출량 산정방법을, '24.1.31까지 탄소발자국 등급 관련 세부기준을 집행위에서 마련 계획

- (기술문서) LMT, 산업용, 전기차용 배터리의 경우 제조자·생산기업 정보, 탄소발자국, 관련 물질정보* 등 준비 필요

* 코발트·납·리튬·니켈을 함유한 경우

- (제품설계) 이동식 및 LMT 배터리의 경우, 수명이 다한 배터리를 소비자가 쉽게 교체할 수 있도록 제품설계(~'24.1.1)
- (배터리 여권) LMT, 산업용, 전기차용 배터리의 제품정보, 처리·재활용 정보를 담은 배터리 여권(Passport) 시스템 도입(~'26.1.1)
- (시장감독) 회원국별 감독기관 지정, 규제 이행에 대한 시장감독 강화
- (제재조치) 규정 미준수에 따른 제재는 회원국별 시행

II

법안 주요내용

□ 공식명칭 및 규범 유형

- (명칭) 지속가능한 기업실사 지침(Directive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 입법 과정에서 법안 명칭이 지속 변경되어 핵심내용만 남긴 ‘공급망 실사 법안(due diligence directive)’으로 주로 통요
- (유형) 지침(Directive)

<EU 집행규범 유형>

구분	개요
규정 (Regulation)	· 회원국 정부, 개인, 법인을 망라해 EU 전체에 직접 적용되는 강력한 규범
지침 (Directive)	· EU에서 전반적인 목표와 국내법 제정 시한만 제시, 회원국이 별도 국내법 제정
기타	· 결정(Decision): 경쟁정책, 기금 등 특정 사안과 대상에게 권리와 의무 부여 · 권고 및 의견(Recommendation, Opinion): 법적 구속력 없이 공동정책의 목표 제시, 특정 사안에 대해 의견 발표 시 사용

- 통상 지침은 실사의무 및 법안 내용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만을 제시, 회원국의 국내법 입법 과정에서 EU 지침보다 높은 수준으로 규제 가능
- 이에 국가별로 관련법 내용이 상이해 향후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나,
- 민사상 손해배상 및 위반 시 제재 EU가 아닌 회원국이 규제하는 부분으로 역내 일괄적용되는 ‘규정’이 아닌 ‘지침’ 형태 입법으로 추정

□ 적용대상

- (개요) 고용인원 및 매출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역내·외 기업
 - 역내기업의 약 1%(1.3만개사), 역외기업 4천개사에 적용될 것으로 추산

○ (세부기준)

구분		대상기준	예상기업수
역 내	대기업	· 근로자 수 500인 초과 · 전년도 회계연도 기준 전세계 연간 순매출 1.5억 유로 초과	9,400개사
	중견기업 (고위험산업)	· 근로자 수 251~500인 · 전년도 회계연도 기준 전세계 연간 순매출 4천만(초과)~1.5억 유로 이하 · 순매출액의 50% 이상이 고위험 산업군*에서 발생한 경우	3,400개사
역 외	대기업	· 전전년도 회계연도 기준 EU 내 연간 순매출 1.5억 유로 초과 · 근로자수 기준 미적용	2,600개사
	중견기업 (고위험산업)	· 전전년도 회계연도 기준 EU 내 연간 순매출 4천만(초과)~1.5억 유로 · 순매출액의 50% 이상이 고위험 산업군*에서 발생한 경우 · 근로자수 기준 미적용	1,400개사

※ **고위험산업: 섬유, 광물, 농업·임업·수산업**

- (섬유) 섬유·가죽·의류·신발 및 관련 제품 제조, 섬유·의류·신발 도매무역(wholesale)
- (광물) 광물원료의 채굴(원유, 천연가스, 석탄, 갈탄, 금속, 금속광석, 금속비금속 제품(기계장비 제외)), 광물원료 도매무역, 기초·중간 광물제품(금속, 금속광석, 건축자재, 연료, 화학, 기타 중간재)
- (농업·임업·수산업) 식품제조, 농업원료 도매무역, 살아있는 동물, 목재, 식음료

- 한국 수출기업은 역외기업으로 對EU수출액은 순매출액에 포함 전망
- 한국기업의 EU법인은 회원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EU기업으로 분류
- 고위험산업은 OECD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권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산업을 선정

□ 적용시점

- 대기업은 지침 발효 2년 후, 중견기업은 4년 후부터 적용
 - 기준이 되는 발효일은 회원국 법안 발효일이 아닌 EU 지침 발효일
 - 회원국은 늦어도 EU 지침 발효 2년 내 국내법 전환 및 시행 필요

□ 실사의무

- (개요) 인권·환경 관련 기업활동의 전 공급망에 걸쳐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식별하고 예방, 완화·제거 조치 통해 적절한 대응과 피해구제
- (실사대상) 기업, 자회사 및 가치사슬에 있는 협력업체 포함 전 공급망
 - － 기업의 직접공급자·하도급자·간접공급자 등 ‘확립된 비즈니스 관계’*가 형성된 가치사슬 내 협력업체 전반 대상으로,
 - * 법안에서 ‘지속적이고, 가치사슬의 부수적이거나 경미한 부분이 아닌 직간접 비즈니스 관계’로 정의
 - － 기업은 매년 가치사슬 내 어떤 협력업체가 확립된 비즈니스 관계에 해당하는지 검토 필요
- (의무 세부내용)
 - ① (실사 내재화) 근로자·자회사의 행동강령, 실사 접근방식, 이행 절차를 기업 정책에 통합하고 관련 규정 마련, 매년 업데이트 필요
 - ② (영향 식별) 가치사슬 내 인권·환경에 대한 실질적·잠재적 부정영향 파악을 조치 채택
 - － 고위험산업군기업은 해당산업과 관련된 심각한 부정적 영향 파악 필요
 - ③ (잠재적 예방·완화) △부정적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와 협의해 예방조치 마련 및 시행, △협력사와 실사준수계약* 체결
 - * 집행위는 추후 관련 표준계약조항(model contract clauses) 수립 예정
 - － 기업은 제3자 검증 또는 산업 이니셔티브를 적용해 협력사의 실사계약 준수여부를 확인 필요, 3자 검증 시 발생비용은 기업에서 부담
 - －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예방, 완화할 수 없는 경우 기업은 해당 협력사와 새로운 사업관계를 맺거나 기존사업 확장을 삼가야 함

④ (실질적 영향 종료·최소화)

- 기업은 △피해자 손해배상, △(부정적 영향 즉시종료 불가 시) 시정조치 마련 및 시행, △직접 협력사로부터 기업의 행동강령 및 시정조치 준수를 계약 통해 보증 필요
- 문제가 있는 협력사와 새로운 사업관계를 맺거나 시존사업 확장 삼가야 함

⑤ (고충처리) 이해관계자* 대상 고충처리 시스템을 운영, 불만사항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

* 개인, 노동조합, 시민대화 또는 관련 조직 등

- 불만을 제출한 이해관계자는 기업에 적절한 후속조치를 요청하고, 논의를 위해 기업대표와 만날 수 있음

⑥ (모니터링) 부정적 영향의 식별, 예방, 최소화 등의 조치가 취해졌는지 최소 연 단위 모니터링 실행 및 실사 규정 업데이트

⑦ (정보공개) 매년 4.30까지 자사 홈페이지에 실사정보 공시의무

- 향후 보고기준에 관한 내용을 위임법률 통해 별도로 정할 계획

○ (대기업 기후대응) 대상 역내·외 대기업은 사업모델 및 전략이 파리협정과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에 부합토록하는 사업계획서를 채택

- 기후변화가 기업 운영상 주요 위험 또는 영향으로 파악될 경우 기업은 사업계획서에 온실가스 배출감축목표 포함 필요
- 아울러 경영진 성과상여금제도가 있는 경우, 기업은 사업계획서 내 명시된 기후대응 의무 이행, 지속가능성 강화를 상여금과 연계 필요

□ 법적책임 및 제재

- (민사책임) 기업 자체활동뿐 아니라 협력사로 인한 인권·환경 내 부정적 영향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 － 단, 기업이 간접협력사와 실사준수계약 체결 및 이행여부 확인 등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 취한 경우 책임 면제
- (위반 시 제재) 금전, 행정 등 제재조치는 회원국별 자율 결정
 - － 과징금 부과 시 제재규모는 기업 매출액에 비례해야 함

□ 기타사항

- (중소기업 지원) 직접 규제대상은 아니나, 대기업 납품 등 공급망을 통한 간접 영향이 예상되므로 지원 필요
 - － 회원국은 중소기업 전용 플랫폼·웹사이트를 구축해 재정 및 대응역량 강화를 지원, 집행위는 실무 가이드라인 마련 계획
 - (역외기업 역내 대표자 지정) 적용대상 역외기업은 사업을 운영 중인 회원국 내 법인 또는 자연인을 공식 대표자로 지정,
 - － 대표자의 성명, 주소, 이메일 및 전화번호를 감독기구에 통보 필요
 - (경영진 의무) 적용대상 역내기업은 기업 결정에 인권, 기후변화, 환경 등 지속가능성 여부를 포함
 - (감독) 회원국은 1개 이상 감독당국을 지정해 실사이행을 모니터링
 - － 집행위는 유럽 감독당국 네트워크*를 구축, 회원국간 통일된 지침 적용 및 협력체계 강화
- * European Network of Supervisory Authorities, 회원국별 감독당국 대표로 구성
- (보고 및 개정검토) 지침 발효일로부터 7년 후 집행위는 유럽의회 및 이사회에 이행상황을 보고하고 법안 개정여부를 검토

III 공급망 실사 관련 EU 기업 사례

가. 기사행 실사법 관련 기업 분쟁 사례

□ 프랑스, '17.3월부터 기업실사의무법 시행 중으로 기업 위반사례에 대한 재판 진행 중

- 현재 프랑스(인권·환경), 독일(인권·환경), 네덜란드(아동노동) 3개국이 개별 국내법을 채택
 - － '17년부터 관련법을 시행중인 프랑스 기업의 법적 분쟁사례 확인가능
- 주로 아프리카, 남미 등 개발도상국에서 사업을 진행 중인 프랑스 대기업이 제소되었으며, 소송주체는 인권·환경·지역단체
 - － 사업운영 과정에서 환경·인권·사회에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거나, 초래할 가능성 존재 시 법적의무불이행으로 간주하고 대책수립 요구
 - － 주요기업 제소 사례

기업명	분야	위반 혐의
Total	에너지 기업	우간다, 탄자니아 사업운영 과정에서 환경, 및 주민 인권에 위험 초래 및 법적의무불이행
Électricité de France (EDF)	국영 전력회사	멕시코 풍력단지 사업 시 원주민 인권, 재산권에 위험 초래해 법적의무불이행
Suez	수자원 기업	칠레 식수원 사업 진행 과정에서 원유 유출로 주민 인권 및 환경 위험 유발

- 분쟁기업은 △사업의 인권, 환경 영향평가 및 실행계획 공개, △지역 환경 및 인권보호를 위한 CSR 활동 추진, △전문가 채용 및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대응했으나
 - － 사업 철수에 이른 사례도 발생한 것을 확인

① 토탈(Total)

- 프랑스, 우간다의 인권·환경보호단체 6곳*, Total을 Tilenga 및 EACOP 사업 관련 기업실사의무법 위반혐의로 제소('19.10.23)

* (프) Friends of the Earth France, Survie

(우) AFIEGO, CRED, NAPE/Friends of the Earth Uganda, NAVODA

사업명	주요 내용
Tilenga	우간다 Albert 호수지역 원유개발사업. 약 10억 배럴의 원유 시추 위해 400개 유전 개발. 토탈,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 우간다국영석유회사(UNOC) 협력 운영
EACOP (East African Crude Oil Pipeline)	탄자니아와 우간다를 잇는 1,445km 길이 동아프리카 원유 송유관 건설 사업. 토탈,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 우간다 국영석유회사(UNOC), 탄자니아석유개발청(TPDC) 지분 보유

- 제소에 앞서 동 단체는 인권 및 환경보호 법적의무불이행 혐의로 경고처분을 발송,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및 공개 요구 ('19.6.24)
- (주요혐의) 해당지역 환경 및 주민인권에 심각한 위험 초래
 - (인권) 원주민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강압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적절한 수준의 금전적 보상이 이뤄지지 않음
 - 원주민은 급작스럽게 토지, 집, 농지, 작물 등의 소유권을 잃어 일상생활 및 향후 경제활동이 불가능해지고, 학생은 교육 기회를 박탈당함
 - (환경) 송유관이 국립공원과 나일강 하류지역 등 수자원과 밀접하고 생태계 다양성에 중요한 지역을 통과해 환경변화·오염 우려
 - 지진발생 위험도 또한 높아 자연재해 발생 시 환경 파괴 위험 존재
 - 아울러 생산되는 원유의 점성이 높아 원활한 운송을 위해 송유관에 지속적으로 열을 가해야 하며, 이때 배출되는 열과 탄소로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 우려

- (기업대응) 법적 혐의를 부인하는 동시에 관련대응 적극 추진
 - 경고처분 관련, Total은 성명서를 통해 혐의를 완강히 부인 ('19.9.30)
 - Total은 기업실사의무법 관련 계획을 통해 인권, 기본권, 건강, 안전, 환경에 대한 회사 방침을 명시하고 있어 위법사항이 없다는 주장
 - 동 법에는 기업의 전반적인 위험에 대한 의무를 부과할 뿐 개별 사업의 위험분석 및 대응의무는 없다는 입장
 - 아울러 사업추진을 위해 국제금융공사(IFC)의 기준을 준수한 환경 및 사회 영향평가를 지역 이해관계자 7만 명 이상에 시행
 - 독립적인 전문가가 산정한 가격으로 지역자산 가격을 책정, 취득했으며, 보상방식도 소유자 요구에 따라 주거시설 제공 또는 금전적 보상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
 - '20년 연간보고서 통해 기업실사의무법 관련 계획 및 Tilenga · EACOP 사업 시 법이행을 위한 계획 및 실행내용을 상세 기술 ('21.3.31)
 - 두 사업에 제기된 사회적, 환경적 이슈 대응방안을 이사회 동의를 거쳐 비재무적 실적에 공개('20.12.16)
 - '20년 자체수립한 생물다양성 정책준수를 위해 자발적으로 Tilenga 사업지역을 축소하고 비사용지역의 개발권리를 포기
- * 당초 국립공원(Murchison Falls park) 면적 10%에 대한 사용허가를 취득했으나, 1%만 사용하는 것으로 사업계획 수정
 - 국립공원 보존을 위한 관리인력 50% 증원, 동물보호를 위해 우간다 야생동물보호협회와 협력 등 행동계획 수립 및 실행 예정
 - 이밖에 국제인권연맹(FIDH), 옥스팜(Oxfam)과 논의 통해 정보 공개 및 대응 정책 추가 수립

- 이사회는 사업 진행 시 생물다양성 및 토지취득 관련 가장 높은 수준의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며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승인
- (진행경과) 청구의 심리에 대한 관할권에 대한 분쟁 지속
 - Total은 기업실사의무법은 기업경영과 관련이 있으므로 청구심리 관할권이 상사법원에 있다고 주장, 승인돼 상사법원으로 이관됐으나,
 - 비영리기관의 항소로 대법원이 이관을 기각, 민사법원 관할권이 인정되었으나 관련 판결 등 추가적인 경과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

② 프랑스전력공사(EDF)

- (개요) 멕시코 및 유럽의 인권단체*, 자회사(EDF Renewables)의 멕시코 Gunaa Sicaru 풍력단지 사업기업실사의무법 위반혐의로 제소('20.10.13)
- * (멕시코) Union Hidalgo, ProDESC
(EU) European Centre for Constitutional and Human Rights(ECCHR)
- EDF는 멕시코에 2MW급 풍력터빈 80기를 설치한 풍력단지를 조성하고 '14.4월부터 전력을 생산
- 인권단체는 법 위반혐의로 경고처분을 발송('19.10.3), 잠재적인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가처분 명령 및 피해 원주민 대상 금전적 보상을 요구
- 이후 소송을 제기하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발전소 운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20.10.13)
- (주요혐의) 해당지역 원주민 인권 및 재산권 위협 초래
 - Gunaa Sicaru 지역은 Hidalgo 원주민 거주지로 EDF는 사업 수행을 위해 지역사회 의견수렴 등 적절한 절차를 진행할 의무 보유
 - 그럼에도 EDF는 논의 과정에서 억압 등 불공정하고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해 원주민과 토지 소유자의 인권을 위협

- (기업대응)
 - EDF는 멕시코법을 면밀히 준수하고 있으며, UN의 기업 및 인권에 관한 이행원칙(UNGP)에 입각해 사업을 진행 중으로 위반 혐의 부인
 - '18년 비영리단체가 동 사업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며 OECD에 제소함에 따라 OECD 프랑스 국가연락사무소가 담당하는 중재에 두 차례 참여
 - '20년 연간보고서에서 기업실사의무법 인권 부분에 법적분쟁 내용 기술
- (진행경과) 지방법원에서 절차적 미비를 이유로 분쟁지역 풍력단지 운영 중단 요구 소송을 기각

③ 수에즈(Sue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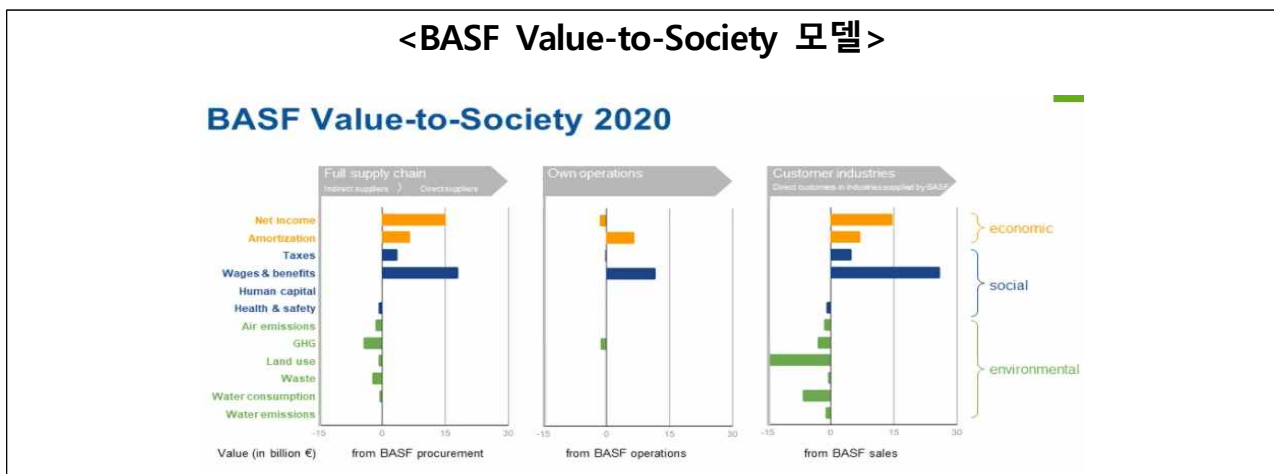
- (개요) 세계최대 수자원기업 Suez, 인권단체 4곳*으로부터 자회사 (ESSAL)의 칠레 식수원 사업 기업실사의무법 위반혐의로 제소 ('21.6.7)
 - * (프) French League for Human right(LDH), (국제)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Human Rights(IFHR) (칠레) Chilean organisations Observatorio ciudadano, red Ambiental Ciudadana de Osorno
 - 앞서 인권단체는 경고처분을 통해 인권 및 환경보호 법적의무불이행을 지적, 지역사회 의견이 반영된 개선계획 수립·공개 요구 ('20.7.9)
 - 이어 Suez가 '21.4월 대응 차원에서 발간한 기업실사의무 관련 계획이 불충분하다며 최종 제소했으며('21.6.7),
 - △식수원 직간접 운영업체에 대한 감독 강화, △지역사회 및 이해관계자와의 투명한 소통방법 마련, △잠재적인 건강위협에 대한 내용을 추가한 실사계획 공개 요구

- (주요협약) 식수원 원유 유출에 따른 인권 및 환경 위험 유발
 - (인권) '19.7.10일 ESSAL이 운영 중인 Caipulli 식수원에 2천 리터의 원유 유출로 10일간 물 공급이 중단되는 등 주민 생활, 건강에 위협 초래
 - 이 지역 전체 인구의 97.9%에 해당하는 49,000 가구의 140,500명 포함, 병원 및 요양원이 피해를 입음
 - ESSAL은 사고 발생 즉시 깨끗하고 충분한 양의 대체 식수원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행에 실패
 - '18년 칠레 수자원 감독기구가 인프라 구축, 사고대처 등 안정성 관련 ESSAL에 경고 및 주의를 주었음에도 이를 개선하지 않았다는 지적
 - (환경) Rahue강 및 Damas 강에도 원유가 흘러들어 생태계 오염을 유발
- (기업대응) 기업실사의무법 준수 위한 노력했으나 자회사 지분 매각
 - Suez는 '20년 연간보고서를 통해 기업실사의무법 준수를 위한 행동강령을 기술,
 - △전반적 사업운영에 대한 위험과악 및 협력사 정기 평가, △위험완화 조치, △경고 메커니즘, △조치 이행여부 평가 위한 모니터링 등을 포함
 - 이후 '20.9월 보유한 ESSAL 지분 전량을 9,200만 달러에 매각
- (진행경과) 인권보호 단체는 Suez의 자회사 매각에도 식수중단 사태 당시 EDF에 법적 책임이 있으므로 지분 매각 후에도 소송 계속한다는 입장

나. 유럽 기업의 공급망 실사 대응사례

① 기업 공급망 활동의 영향을 금전 가치로 환산 - BASF

- 독일 소재 화학기업 BASF는 자사 및 직간접 공급사 활동의 경제, 환경 및 사회적 영향을 금전적 가치로 평가하는 이른바 'Value-to-Society' 모델을 개발
 - 이를 통해 기업활동의 영향을 실용적이면서도 투명하게 검증
 - 계량 가능한 금전적 가치로 환산, 공개함으로써 기업의 지속가능성 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활용
- 'Value-to-Society' 모델의 영향평가 대상 및 분야
 - 대상은 자사, 및 직간접 공급자와 다운스트림 고객기업의 활동
 - 분야는 기업의 이익, 세금, 임금, 인적자본, 보건·안전, 대기오염, 온실가스, 수질오염, 폐기물, 토지이용, 수자원 이용 등
- 공급망 영향평가 위한 새로운 시도이나 계량화의 한계 등을 지적
 - BASF 모델은 기업의 환경과 사회를 위한 공헌을 드러낼 수 있는 새로운 홍보 방식이나,
 - 인권의 가치에 대한 금전적 평가 등 기업 활동이 초래하는 다양한 영향을 금전적 가치로 계량화하는데 대한 한계 등이 문제로 지적



② 행동강령 준수 서약 요구 및 불이행 시 거래 배제 - Vattenfall

- 스웨덴의 국영 에너지기업 바텐폴(Vattenfall)은 전기 및 열에너지를 생산, 자국과 서유럽 및 북유럽 국가에 판매
- '16년 독일 인권단체 Urgewald는 △바텐폴 관련 콜롬비아 광산업체의 반군 자금 지원, △독일 소재 발전소에서 CO2 배출량이 높은 갈탄 사용 및 △갈탄 발전소 운영 중단이 아닌 매각을 추진한 점 등을 비판한 보고서를 발표
- 이에 바텐폴은 적극적인 환경, 사회 대응정책 수립
 - 자사의 CO2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계획을 제시
 - 해당 지역의 인권침해 사실을 부정하거나, 콜롬비아 평화프로세스* 미지시 또는 인권피해자 구제절차 미지원 기업에서의 소싱 중단 결정
- * 콜롬비아 정부와 혁명군간 평화 절차로 양측간 평화협정으로 이어짐
-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전략 채택 및 공식화
 - △공급망 전반 실사 강화, △직간접 공급사와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공급사 지속가능성 역량 강화 등을 추진
 - 이를 자사 공급자 행동강령(Code of Conduct for Suppliers)에 반영해 정기적인 공급망 실사와 관련 분야* 기업 평가 권리를 규정
- * 인권, 노동권, 환경 및 기업윤리
- 정책 미수용 기업 거래 제외 및 기후목표 제시 등 관련노력 지속
 - '19년 바텐폴은 인권 위험평가 및 행동계획 관련 대화를 거부한 콜롬비아 드루몬드(Drummond) 광산을 거래리스트에서 제외
 - '30년까지 네덜란드와 독일 내 석탄 발전을 중단하기 위한 로드맵과 북유럽 지역내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

- 다만 석탄 및 원자력 발전 규제 도입한 독일 정부 대상 소송 진행 중
 - － 바덴폴은 석탄('09년) 및 원자력('12년) 발전 관련 규제를 도입한 독일 정부를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S)에 근거해 제소,
 - － 석탄의 경우 '11년 정부의 환경규제 일부 완화를 통해 합의로 종결되었으나, 원자력 관련 소송은 아직 법원에 계류 중

③ 다운스트림 인권 위험관리 사례 - Lundbeck, Yakorn

- 덴마크 제약회사 룬드벡(Lundbeck)은 난치성 간질 치료제와 마취제 용도의 펜토바비탈 성분 의약품 '넴부탈' 제조·판매 기업
- 제품 사용 목적이 부적합하다 판단될 경우 공급 제한 결정
 - － '11년 미국 교정당국이 룬드벡의 펜토바비탈 성분을 사형집행에 사용하는 사실이 알려지며 공급을 제한해야한다는 여론 확산
 - － 사형에 자사 상품이 사용되는 사실을 인지 후 넴부탈이 형무소로 공급되지 않도록 유통 계획을 조정
 - － 특별 의약품 배달 프로그램을 통해 제한적인 채널을 통해서만 유통, 목적에 맞는 사용을 위해 구매기업을 병원, 치료소 등으로 제한
 - － 구매자는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룬드벡의 승인 없이 전매하지 않는다고 선언한 문서에 서명 필요
- 아콘(Akron)사, 교정당국에 펜토바비탈 판매 금지
 - － 이어 '15년 룬드벡으로부터 넴부탈 사업부문을 인수한 아콘은 교정당국에 대한 펜토바비탈 판매를 금지
- 통상 공급기업 대상 이뤄지는 공급망 실사를 수요기업까지 확장한 경우로 인권침해 우려에 대한 현실적 대응사례

④ 복잡한 공급망 상의 직접 공급사 매핑 사례 - Marks&Spenc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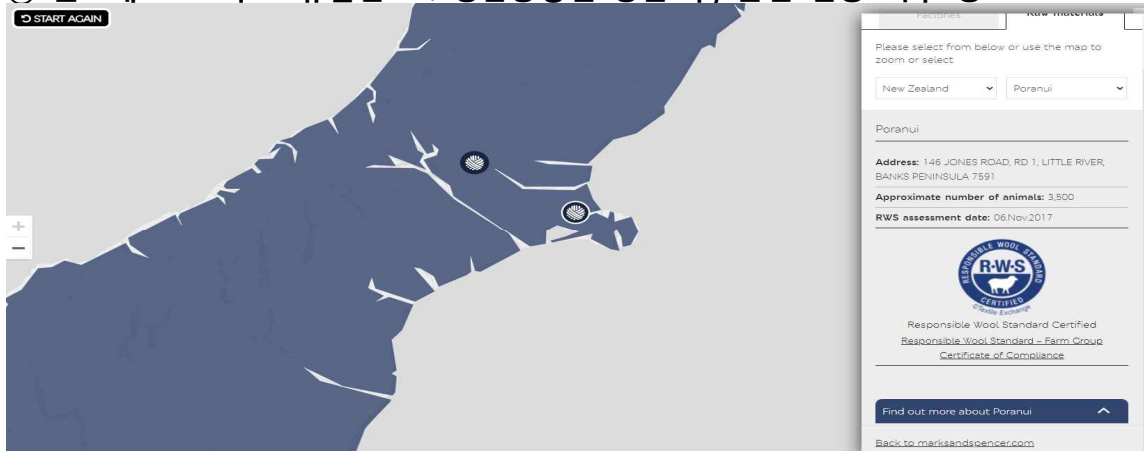
- 마크앤스펜서(M&S)는 의류와 농산품 등을 공급하는 영국 대형 유통 체인으로 복잡한 공급망 매핑(mapping) 관련 참고 사례
- 전세계에 산재한 직접 공급사 정보 매핑, 온라인 제공
 - 상품 형태, 주소, 노동자의 남녀성비, 조합여부 등 직접공급사가 자발적으로 제공한 정보를 기초로 자사가 검증한 정보를 제공
 - 매핑 대상이 직접 공급사에 제한적이고 유럽의 영세 육류 및 치즈 제조사가 제외된 점이 아쉽다는 지적에도
 - 의류, 농산품 등 공급망 위험이 높고 전세계에 공급망이 산재한 경우에 공급망 관리에 참고할 수 있는 사례

<M&S 인터랙티브 맵>

① 전세계 생산공장 지도



② 원소재 > 모직 > 뉴질랜드 : 생산농장별 동물 수, 관련 인증 여부 등



④ 공급망 위험요소 공개 및 추적기능 강화 - H&M

- 스웨덴 의류업체 H&M, 업계 최초 모든 의류 공급자 정보 제공('19.4월)
 - 판매하는 모든 의류에 대한 공급자 정보를 제공하고 공급망 내 위험요소를 공개, 산재한 공급망 내 상품이력 추적 가능성을 강화
 - 소비자는 H&M 웹사이트 또는 앱에서 손쉽게 생산지, 공급자, 생산공장 이름, 주소, 노동자 수 등의 정보를 확인 가능
- 이밖에 공급사 등급별 기준 마련 및 분류
 - △장기계약 파트너로써 생산계획에 함께 참가하는 전략적 파트너사를 '플라티늄' 및 '골드' 협력사, △장기거래 검토 단계의 '실버' 및 △거래 1년 이하 또는 시험 발주사를 '기타'로 분류
- 노동 및 인권단체 등은 공급망 내 인권 현황 감시에 유용한 정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
 - 다만 인권 및 환경조건 등 관련 정보가 제한적으로 임금 조건, 생활임금 보장 약속 등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

⑥ 인권단체와 협력을 통한 인권침해 예방 - Nestlé

- 스위스 기반 식음료 기업으로 전세계 광범위한 공급망을 보유한 네슬레는 인권단체와 협력해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 시스템을 강화
- '10년부터 네슬레 사업정책 및 절차에 인권 내재화 노력
 - 덴마크 인권단체('DIHR')와 혁신 파트너십을 체결('10년), 인권영향평가('HRIAs')를 중심으로 하는 공급망 실사 프로그램을 개발
 -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13년 네슬레 사업장 7개소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보고서를 발행

- 이와 연계해 DIHR, 인권·개발 컨설팅기업, 국제기구 등 20여 전문가가 참여한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 관련 논의 주도
- 공급망 내 잠재 인권 위험 파악 및 개선 노력
 - '18년 DIHR과 환경분야 컨설팅 업체 The Forest Trust는 네슬레의 인도네시아 팜 오일 공급망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보고서 발간
 - 이를 통해 네슬레의 직간접 공급사의 실존 또는 잠재적 노동권 등 인권 위험 영향을 평가
 - 네슬레는 보고서 결론이 제시한 사항에 대한 개선 계획을 발표
- 이밖에 '18년 국제인권선언 70주년에 맞춰 자사 인권교육프로그램을 개선
 - '19년 업계 최초로 일반인의 인권교육프로그램 참여를 허용
- 이러한 인권침해 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트디부아르 아동노동 관련 혐의로 피소된 바 있으나,
 - 네슬레는 집단소송 변호사들이 공급망 정보를 적극 공개한 기업을 타깃으로 무리한 소송을 제기한다며 비판

IV

전망 및 시사점

가. 현지 반응 및 전망

- 집행위는 '24년부 법안 시행 목표이나 유럽의회 통과 여부 불확실
 - 집행위가 발표한 법안 초안의 규제 수준이 당초 유럽의회 결의안('21.3) 대비 완화돼 의회 통과 불확실
 - * 의회 결의안 담당 볼터스(Lara Wolters) 의원, 중소기업으로도 적용대상 확대 요구(2.23)

- 의회 결의안은 대상에 중소기업이 포함, 실사항목에 인권·환경 외 기후변화도 포함되는 등 보다 규제수준이 높음

<EU 공급망실사 관련 쟁점별 입장 정리>

주요 쟁점		유럽의회('21.3월)	업계	집행위초안('22.2월)
공급망실사	실사대상	대기업 및 상장·위험 산업군 중소기업	중소기업 제외	대기업 및 위험 산업군 중견기업
	실사내용	인권, 환경, 기후변화	기후변화 반대	인권 및 환경 * 기후변화의 경우, 실사대상은 아니나 대기업의 기후변화 전략 수립 의무가 부과됨
기업지배구조 * 대표자 책임 의사결정구조 등		포함	포함 반대	포함
제재조치		회원국 재량	도입 반대	회원국 재량
민사책임 부과		회원국 재량	도입 반대	조건부 포함
입증책임 전환 * 자침을 준수했음을 기업이 입증		도입	도입 반대	미포함

자료 : EU 집행위, 유럽의회, 현지언론 토대로 브뤼셀 무역관 정리

□ 규제 수준 두고 업계 및 인권·환경 단체간 입장차 지속

구분	입장
Business Europe	· EU 기업이 전 세계 밸류체인 전반을 통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제재 및 민사책임 등에 따른 투자 감소, 유럽 기업경쟁력 저하 초래 전망
독일 기계 산업협회 (VDMA)	· 이번 법안은 기업들로 하여금 인권·환경 분야 내 개선 여지가 낮은 역외국 기업과의 공급계약을 철회하도록 만들 것임 * VDMA : Mechanical engineering industry association
기업정의 위한 EU 시민단체(ECCJ)	· 실사준수계약을 통해, 기업들은 공급사로 책임을 전가할 수 있게 되는 등 집행위의 공급망 실사 법안은 면책과 결함으로 가득 차 있으며 EU 전체 기업 중 0.2% 미만의 기업에만 실질 적용될 것 * ECCJ : European Coalition for Corporate Justice
CFA 연구소 (CFA Institute)	· 집행위가 (오랜기간 법안 발표 지연 후) 마침내 법안을 공개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나, 적용 대상에 중소기업이 제외된 것은 큰 유감
Global Witness (비영리기관)	· 업계의 커다란 반발에도 불구하고, EU가 더 이상의 양보없이 입법을 추진하는 경우 공급망 실사법은 향후 인권 및 환경보호에 있어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

구분	입장
HEC Paris(프랑스 그랑제쉴) EU 법학 교수 Alberto Alemanno	· 이번 집행위가 공개한 법안은 당초 예상 대비 크게 완화되었는데, 이는 업계의 강력한 로비에 따른 결과임
WWF(환경단체)	· 극소수의 적용대상 기업으로 규제 파급영향 미미. 지속가능성 및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보다 강화된 법안이 마련돼야 할 필요

* 자료 : 현지 언론 및 업계 보도자료 토대로 브뤼셀 무역관 정리

나. 우리기업 영향 및 대응방안

□ EU 공급망실사지침의 직접대상 아니더라도, 간접요구 대비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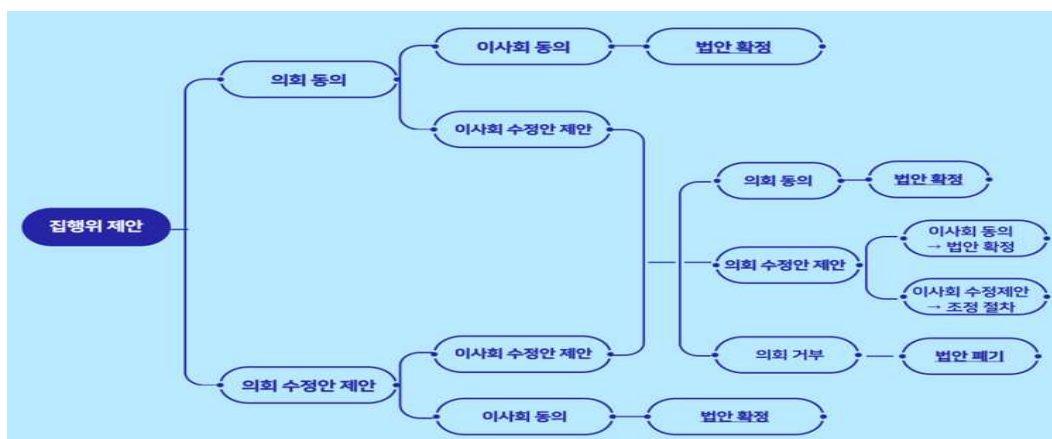
- 향후 지침 적용대상인 역내외기업의 공급망에 포함된 중소기업까지 간접적 영향 예상
 - － 집행위 법안 초안상 대기업 위주 타깃으로, 중소기업의 직접적인 부담은 다소 완화되었으나,
 - － 협력사 선정 시 EU 기업들이 높은 인권·환경 기준을 요구하는 등 EU로 수출하는 우리기업에 간접 영향 가능성
- EU 실사 기준의 선제 적용 등 신속한 공급망 관리 및 점검 필요
 - － 향후 EU 협력사측에서 실사준수계약 체결 등의 요청이 예상
 - － 지침상 실사의무와 부록서에 명시된 인권 및 환경에 관한 국제협약을 사내정책과 전략에 반영하고 관련 실행계획 수립할 필요
 - － 이밖에 자회사 및 공급망 내 협력사와의 협의를 통해 인권 및 환경에 대한 영향평가 수행, 위험도 분석 필요

□ 입법 과정 중 법안내용 변동 가능성 높아 입법동향 주시 요망

- EU 내부 협의에 난항이 예상돼, 최종안이 변경될 것이란 반응 다수

- 법안 발효를 위해서는 유럽의회 및 이사회 동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 이 과정에서 양 기관은 수정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여러 차례 검토(독회) 및 조정 절차 진행 전망
- 실사대상 및 항목 등 집행위 초안과 의회 결의안간 세부내용이 상이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 동향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EU 일반입법절차>



자료 : EU 정책 브리핑 토대 무역관 정리

☐ 회원국별 국내법 파악 및 감독기구와의 의사소통 채널 확보

- 실사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및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각 회원국마다 상이할 전망
 - 국내기업이 영업활동을 하는 회원국의 국내법 입법 동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감독기구의 제재강도 파악 필요
- 감독기구와의 협조 정도가 제재 및 손해배상 책임 수준을 결정할 때 고려 요소인 바,
 - 감독기구와의 의사소통 채널을 확보하고, 관련 조사 및 현장점검 시 감독기구의 요청에 협조할 필요

□ 향후 기업활동 관련 공급망 실사 의무 강화 전망, 사전대비 통한 EU 공급망 진입 기회로 활용 요망

- 동 지침 외에도 공급망 실사를 의무화하는 법안 다수 입법 진행 중
 - 현재 산림 벌채와 황폐화 억제 규정, 배터리 및 배터리 폐기물 규정 등이 입법절차 진행 중으로
 - 기업활동 관련 규범에 급망 실사 의무 규정이 포함되는 추세
- 협력사 선정단계부터 EU 기업의 높은 인권·환경 기준 요구 가능성
 - 관련 기준이 낮은 국가에서 높은 국가로의 공급망 재편이 전망되므로,
 - 공급망 관리 점검 및 관련 정보 수집 등을 통해 EU 기준을 선제 적용하고 EU 공급망 진출 기회로 활용

/끝/

작 성 자

- 브뤼셀 무역관 안재용
 권지연
 김도연

※ 동 자료는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와 공동으로 자료조사를 진행했습니다.

EU 공급망실사법 주요내용 및 사례

Global Market Report 22-013

발 행 일	2022년 6월
발 행 인	유정열
발 행 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주 소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13
전 화	1600-7119
홈 페이지	www.kotra.or.kr
문의처	브뤼셀 무역관(+32 2 205 0085)

- ISBN: 979-11-402-0321-5(95320)



